

사회관계장관회의	
회 차	2021-20 (2호)
안전유형	보고

사회부처별 현안과제 (1)

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

2021. 11. 16.



관계부처 합동

1 추진 배경

-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항이 법제화 된 이후,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침해 사건 건수는 감소*하고 있으나,

* [감소 추세] ('14)4,009건 → ('16)2,616건 → ('18)2,454건 → ('20)1,197건(코로나 상황)

- 침해 유형이 다변화되고, 위중한 침해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

※ [교총] 교원의 50.6%가 교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인식(7,991명 참여, '21.5.11.)

[교사노조] 교원의 92.9%가 원격수업 중 본인의 초상권 침해 우려(8,435명 참여, '21.3.2.)

현장 2020년 교육활동 침해 및 상담 사례

- ①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처하여 교사 이모티콘을 만들어 유포, 욕설
- ② ZOOM 수업 중 불특정 다수가 온라인으로 공격하여 수업 중단
- ③ 초등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충격적인 성희롱 메시지 발송

- 침해 행위의 주체가 보호자 등 일반인*에 의한 침해가 늘어나고 있어,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

* (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) ('16)3.6% → ('17)4.6% → ('18)8.6% → ('19)8.5% → ('20)9.7%

2 현장 의견 수렴

- 교원단체, 시도교육청, 부총리 현장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 수렴

① 6개 교원단체 의견수렴('21.3.31. / 5.25.)

※ 교사노조연맹, 새로운학교넷, 실천교육교사, 전교조, 좋은교사운동, 한국교총(가나다 순)

② 시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·변호사 협의회 개최('21.4.8. / 6.2.)

③ 부총리-교원과의 현장간담회(광주 서부교원치유지원센터) 개최('21.5.18.)

④ 현장전문가 협의회(학교장, 교감, 교사, 변호사, 교육청 담당자 등) 개최('21.6.29.)

⑤ 「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」 개정(안) 의견수렴('21.8.10.~8.30. / 9.16.~9.26.)

☞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

3 개선방안

- ❖ 교육활동 보호의 첫걸음은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노력이라는 판단하에,
①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, ② 교육활동 침해를 받아 고통을 받는 교원들에 대한 치유 지원을 확대, ③ 교육활동 침해사안 대응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

【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 】

- ① (대상별 예방교육)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분석하여 학생·보호자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·배포
 - (학생) 빈도수가 많은 침해 유형*의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고, 학생이 직접 콘텐츠**를 개발하여 자발적 인식 제고 유도
 - * (20. 학생에 의한 침해) 모욕·명예훼손(58%), 성관련(13%), 상해·폭행(10%)
 - ** 교육활동 보호 주제의 영상(UCC, 플래시몹), 웹툰, 포스터 공모전 개최('22.3.~5.)
 - (보호자) 최근 증가하는 보호자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 지원센터를 통한 예방교육자료 안내를 확대
 - * (20) 학부모지원센터(학부모 On누리 사이트)에 예방교육 영상, 카드뉴스 자료 탑재
- ② (대국민 인식 제고)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보호자 등 학교민원인 대상 안내를 강화하고, 학교 구성원간 존중과 배려를 주제로 '연중 대국민 캠페인' 실시
 - (전화 안내 메시지) 민원인이 전화를 통해 악성 민원,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통화연결음 설정 추진
 - ※ 「교원지위법」시행령 제2조의2(교육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등) 개정 : (추가) 악성 민원,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
 - ※ (전화 안내문구 예시) 학교 교육활동은 「교원지위법」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. 폭언이나 욕설은 삼가해주시고, 선생님과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.
 - (온라인 캠페인) 학생-교사-학부모 교육주체간 상호 존중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분기별 SNS 릴레이* 캠페인 운영
 - * 분기별 릴레이 캠페인 주제(교육부 SNS, 인스타그램, 틱톡 등 연계)
#선생님덕분에(3~5월), #친구덕분에(6~8월), #부모님덕분에(9~11월), #학교덕분에(12~2월)

【 교원의 치유 지원 확대 】

③ **(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 확대)**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외에 직무 소진 교원에 대해서도 법률·심리 상담, 문제해결·치료 지원 확대

※ 「교원지위법」제17조(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) 개정 : 교원 지원 범위 확대

- (기능 확대) 교육활동 침해, 코로나19 상황, 직무 스트레스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지원 기능 확대

※ (교육회복 종합방안 연계) '교원치유지원센터' 운영 17억원('21~'22.특교)

- ① 상담·치유 전 과정에 대한 '원스톱' 지원체계 마련하고 관련 비용 지원
- ② 심리치유, 관계회복, 의사소통,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

- (운영기반 마련) 교원 수 대비하여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치유지원센터 요건 분석 후 최소한의 인력·재정 규모의 법제화

※ 「교원지위법」시행령 제10조(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) 개정 : 지역 교원 수 대비하여 센터 전문 인력 확보, 심리 상담과 법률 자문 프로그램 마련 등 내용 추가

④ **(피해교원 지원 강화)**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, 피해교원을 온·오프라인 입체적으로 지원 확대

- (초기대응 강화) 침해사안 발생시, 피해교원에게 특별휴가 부여 등 초기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명확화

※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→ 피해교원 특별휴가 우선조치 → 교권보호위원회 개최
→ ①침해 인정시(추가 보호조치) / ②침해 불인정시(병가나 연가로 정정)

- (온라인 지원)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, 교원단체 교권담당자와 협업하여 법률상담·지원 등의 온라인 치유센터 운영

※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 : forteacher.kedi.re.kr / 대표전화 : 1899-9876

(현행) 교육활동 침해 관련 내용 안내, 예방교육 자료 안내 등 자료 제공

→ (향후)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운영, 전문가 상담 매칭 지원 등 입체적 지원

【 교원치유지원센터 주요 운영 내용】

- ①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업 운영 ② 업무 담당자 및 교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
- ③ 교원 심리상담(치유) 및 복귀 지원 ④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
- ⑤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 ※ 시도별 여건에 따라 운영 중점이 다름

【 교육활동 침해 대응 】

⑤ **(신고·대응절차 개선)**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적극적 개최와 위원회 조치 사항의 이행력 강화 방안 마련

- (학교교권보호위원회) 학교장 요청 외에도 피해교원이 요청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은폐·축소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

※ 단, 관리자 및 동료교원에 의한 직장 괴롭힘, 갑질 피해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갑질신고센터, 고충심사청구, 소청심사청구, 인권위원회 진정 안내

※ 「교원지위법」시행령 제15조(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회의 소집 요건 추가 (현행)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→ (향후)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(추가)

- (학생 조치)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「교원지위법」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나, 학생이 이를 거부하여 불이행시 징계 조치

※ 「교원지위법」제18조(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) 개정(안)

제1항제1부터 제7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.(추가)

⑥ **(침해행위 유형 정비)**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명시*된 원격수업과 SNS 등 온라인 공간상의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, 교육여건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침해 유형을 정비 추진

※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·화상·음성 등을 촬영·녹화·녹음·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명시('21.10.1. 고시 개정)

4 향후 계획

- (행정 조치) 교육부-교육청 후속조치 이행 협의회('21.하반기)
- (정책 홍보) 예방교육 활성화 및 대국민 캠페인 개최('22. 연중)
- (법·제도 정비) 관련 시행령 및 지침 개정 등('21.11월~계속)

※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사안처리 기능 지역교육청 이관 등 중장기 교육활동 보호강화 방안 검토